

# 영림계획제도가 바뀌었습니다

〈자료 : 산림청〉

## ■ 영림계획이란?

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, 조림, 육림, 벌채, 임도 등 시설,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 계획입니다.

- 영림계획작성 : 의무제 → 권장제
- 산림사업 : 대집행 → 대행

## ■ 영림계획은 누가 세우나?

- 산주가 영림기술자(자격증 소지자)에게 의뢰하여 작성
- 독립가·임업후계자는 자기소유산림에 한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음

## ○ 영림계획구분

- 일반영림계획구 :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
- 협업영림계획구 :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
- 산업비림영림계획구 : 산업비림을 소유하도록 권장 받은 자가 자기소유산림을 산업비림으로 개발하기 위한 영림계획구

## ■ 영림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조림면적·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
- 풀베기·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에 관한

## 사항

- 벌채방법·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(기준벌기령)에 관한 사항
- 임도·작업로·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
-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

## ■ 영림계획의 변경은?

-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내용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
- 영림계획에 포함돼 있더라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
  - 벌채의 연도, 장소, 양 및 방법이 변경될 때
  - 굴취의 연도, 장소, 및 양이 변경될 때
  -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가 변경될 때

## ■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는?

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하고 사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## • 벌채를 수반한 사업신고

- ① 산주는 사업신고를 하기 전에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. 단 무육간벌의 경우 가슴높이의 지름이 16cm이하인 대상목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〈사업신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〉

- 별채구역도 1부
- 입목을 소유·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
- 임도설치의 경우 설계도서
- 작업로·운재로 개설의 경우 노선구역도

〈사업신고를 받은 시군에서는?〉

- 사업기준 및 별채목 등 표지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검을 찍음(경계목·모수 작업의 잔존입목 뿌리부근 ㉔, 간벌·택벌의 경우 대상목 뿌리부근 ㉕)
-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별채대상목 선정 등이 부적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수정토록 통지

※ 산림조합에서 별채구역도 작성, 별채구역 및 별채대상목 표시, 검인찍기를 행한 경우 시장·군수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.

- ② 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간내 별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연기 신고

• 별채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신고

- 사업신고서에 사업구역도 1부를 붙이면 됩니다.

■ 사업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?

- 영림계획인가 내용에 포함된 경우(신고에 의한 별채)
  - 병해충, 산불피해 또는 자연재해로 고사 및 고사상태 입목, 풍설해 피해목
  - 간벌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 16cm이하의 입목을 솎아내기

- 오동나무, 현사시, 이태로포플러, 양버들, 옷, 황칠, 미루나무 벌채
- 표고재배용 입목 벌채(연간 50m<sup>3</sup> 이내)
-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용 벌채

• 영림계획과 상관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경우 (임의 벌채굴취·채취)

- 육림용으로 풀베기·가지치기·어린나무가 꾸기를 위한 벌채
-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 제거
- 대나무벌채 또는 굴취·채취
- 재해예방, 농가건축 및 농임업용 등으로 연간 5m<sup>3</sup>이내 벌채(독림가 임업후계자는 50m<sup>3</sup>이내)
- 임도 또는 방화선 설치를 위한 지장목 벌채
- 농작물 생육피해 또는 주택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
- 축산폐수정화, 유기질 비료용 톱밥 등 생산을 위한 가슴높이 지름 15cm미만인 간벌채 및 불량목 벌채

■ 영림계획 인가의 취소

-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, 육림, 벌채실적이 50%미만일 때
-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 받았을 때
- 사업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업대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
■ 사업의 대행

- 사업정지 :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영림계획과 다르게 사업할 경우 조림·육림·벌채 기타 사업 등을 정지

• 시업대행

-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업을 대행합니다.
- 시업대행은 산림조합,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입니다.

• 직접시업

- 영림계획 편성임지에서 국가 시책상 필요한 경우
-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·군에서 직접 시업을 합니다.

■ 영림계획작성시 혜택은?

-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계획대로 산림경영을 하면
  - 영림계획 작성비(8,102원/ha 범위내)를 보조해 드립니다.
  - 영림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나 신고절차없이 시업이 가능합니다.
  - 산림사업비 보조와 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- 소득세·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드립니다.

종 류	감 면 내 용
소 득 세	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립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시 발생한 소득의 경우 50/100감면
상 속 세	보전임지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(영림)종사자에게 상속시 2억원 추가 공제(기본공제: 일반인 2억원, 영농종사자 4억원)
종합토지세	보전임지내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(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는 제외)

